

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과정

- 발의일자: 2023. 8. 25.
- 발 의 자: 김종일 의원 외 2명
- 회부일자: 2023. 8. 28.(의안번호 제472호)
- 상정일자: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3. 9. 11.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김종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(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)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대한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
(안 제1조 및 제2조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근거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
(안 제3조 및 제4조)
-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결정 (안 제5조 및 제6조)
-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(안 제7조)
-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홍보(안 제8조 및 9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진호)

가. 법적 근거 및 타당성

-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위임에 따라 안전용품 제공 등 지원의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「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조례를 통해 포괄적으로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.

나. 조문별 주요 검토 사항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기본 방향을 간결하게 기술하고, 사업 시행에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,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필수적인 안전 환경 요소를 전기·가스·소방·유류·자연재해 등의 분야로 나누어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따른 지원 여부를 구청장의 재량 판단에 맡겼음.
-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신청의 방법과 절차,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결정 방법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그 밖에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력 및 사업 홍보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본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의견

-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사고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사료됨. 그러나 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일부 규정은 개별 조례와 중첩될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·폐지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심사결과: 원안가결